# 보호출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출산 ]**

『보호출산』 콘텐츠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출산의 신청과 철회, 위기임산부 정보의 비식별화, 산전후 의료지원 등 보호출산 과정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출생사실의 통보,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출생증서 공개 청구 등에 관한 법적 절차와 지원 내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보호출산 ..... 1
1. 위기임산부 보호 ..... 4
1.1. 위기임산부 상담 ..... 4
1.1.1. 위기임산부 상담절차 ..... 4
1.1.2.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 6
2. 보호출산 ..... 9
2.1. 보호출산 신청 ..... 9
2.1.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9
2.1.2.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10
2.2. 보호출산 지원 ..... 12
2.2.1.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 12
2.2.2.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 14
2.3. 보호출산 신청 철회 ..... 16
2.3.1.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 16
3.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 ..... 18
3.1. 출생등록될 권리 ..... 18
3.1.1.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 18
3.1.2.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 20
3.2. 양육될 권리 ..... 21
3.2.1.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 21
3.3. 아동의 알권리 ..... 23
3.3.1. 출생증서 공개 청구 ..... 24

## 1. 위기임산부 보호

### 1.1. 위기임산부 상담

#### 1.1.1. 위기임산부 상담절차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운영절차]

### 상담원칙

#### 시기 및 대상

▪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 ※ “위기임산부”란?
>
>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

▪ “위기임신 상담”은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원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보호출산 상담”은 보호출산 및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가 초기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에 대한 안내·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기임신 상담을 먼저 받아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12쪽 및 115쪽 참조).

>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기임산부에 대한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후단).

▪ 중앙·지역상담기관 및 관련 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지정 및 운영됩니다.

[출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추진체계 참조]

## 상담방법

### 대면상담 원칙

▪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전단).

### 통합 전화상담 및 모바일·온라인 상담

▪ 위기임산부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4시간 전화상담: ☎ 1308

② 모바일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③ 온라인상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상담문의 참조]

※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지역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 위기임신 상담 안내사항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안내

▪ 위기임신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위기임신 상담 안내사항**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 상담 안내사항

### 보호출산 관련 안내

▪ 보호출산 상담에서는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보호출산 상담 안내사항 |
| --- |
|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br>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br>3. 자녀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br>4. 아동 보호조치 이전 숙려기간<br>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br>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br>7.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br>8. 출생증서 작성 및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br>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의 산전·산후 지원 서비스연계

### 시설입소 지원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그 밖에 위기임산부가 안내 및 연계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58쪽~109쪽과 이 사이트의 『한부모가족』 및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보호출산

### 2.1. 보호출산 신청

#### 2.1.1.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 위기임부 본인 신청

###### 상담 후 신청

▪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참조).

> ※ “위기임부”란?
>
> 임신 중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 “보호출산”이란?
>
>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신청방법

▪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보호자 대리 신청

###### 대리 신청 사유

▪ 위기임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리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
- 14세 미만인 사람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보호자”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1.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2. 위 1.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3. 위 1. 및 2.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장 또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위 1.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신청방법

▪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위기임부가 위의 대리 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출산 신청 이외에 보호자의 대리 가능 행위

- 다음의 행위를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후단).

√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기 위한 통지

√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사실과 출생정보의 통보

√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위기임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 비용지원 신청

## 2.1.2.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란?

▪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 또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 ※ “위기임부” 및 “위기산부”란?
>
>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함)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 “보호출산”이란?
>
>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신청방법

▪ 위기산부가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구분 | 첨부서류 |
|---|---|
| 공통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음의 모든 서류)**<br>**▪ 위기산부가 대리 신청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br>**▪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br>**▪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br>**▪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br>**▪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br>**▪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 신청 이후 조치

### 상담 제공 및 출생증서 작성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제공하고 출생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 그 밖에 준용되는 보호출산 절차**

-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보호출산의 규정이 준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 구분 | 바로가기 |
|---|---|
| 신청절차 | 링크 |
|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 링크 |
|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 링크 |
| 출생사실의 통보 | 링크 |
| 출생증서 공개 | 링크 |

## 2.2. 보호출산 지원

### 2.2.1.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 위기임산부 정보의 비식별화

**"비식별화"란?**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비식별화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해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전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비식별화를 위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입력사항**

1. 신청인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참조).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1쪽).

## 비식별화된 정보 이용

### 임산부확인서 발급 및 활용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하며,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인은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신청인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 진료기록부 작성 및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

▪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7-138쪽).

※ 비식별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Q.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비식별화된 정보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보호출산 신청인은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등 임신 사실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하며, 비식별화된 정보(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신원 노출 우려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산모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역상담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출처: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8쪽 및 140쪽 참조]

※ 보호출산 신청인의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출산-보호출산 지원-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2.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 산전 검진 및 출산

###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신청인에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4쪽).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 비용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지원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비, 숙려기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0-141쪽 참조).

| 구분 | 의료비 지원 | 숙려기간 비용 지원 |
|---|---|---|
| 목적 |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부담을 경감 |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 이후 숙려기간(7일 이상)동안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원 |
| 지원금액 | 1회당 100만원<br>※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의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등) | 1회당 최대 140만원<br>(일 20만원, 최대 7일 지급)<br>※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40만원만 지원 |
| 신청가능 시점 | 보호출산 신청 접수 시 | |
| 지급가능 시점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아동을 출산한 즉시 지급 가능 |

### 지원 절차

▪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1쪽).

▪ 위의 비용 지원은 신원 노출을 방지하면서 사용처 업종 제한이 가능한 무기명선불카드를 활용하여 지급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2쪽).

### 지원금 환수

▪ 보호출산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2.3. 보호출산 신청 철회

#### 2.3.1.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철회시기**

▪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단서).

> ※ "위기임산부"란?
>
>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 "보호출산"이란?
>
>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철회방법**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입양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철회
>
> • (철회시기)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본문).
>
> √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로 보지 않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단서).
>
> • (철회방법)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입양의 취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보호출산 신청 철회 이후 조치

### 아동의 재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경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아동을 인도받았었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아동을 인도받은 때부터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후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본문).

- 다만, 이미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단서).

▪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본문).

### 출생사실 통보내역 정정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 철회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에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 비식별화된 정보 등 출생정보 및 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삭제하도록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51쪽).

-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
- 해당 위기임산부의 인적사항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비식별화된 관리번호(「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
-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 출생증서 폐기

▪ 보호출산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본문).

▪ 다만, 이미 출생증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 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이관되어 보존 중인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3.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

### 3.1. 출생등록될 권리

#### 3.1.1.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통보

###### 출생정보의 기재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함)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 출생정보 |
| --- |
|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br>√ 비식별화된 가명<br>√ 비식별화된 관리번호<br>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br>3. 아동의 출생 순서<br>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 “보호출산”이란?

임신 중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출생정보 통보 절차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 위의 통보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절차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출처: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13쪽 참조]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통보

### 출생정보 통보 절차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전단).

### 출산사실 증빙서류

▪ 위에 따라 출산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후단).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보호출산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 출생통보 후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 시·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을 청구(수수료 면제)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재판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 지역상담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 3.1.2.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출생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통보 내역 삭제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통보된 경우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신청인에 관하여 제출·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

> ※ “위기산부”란?
>
>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4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참조).

| 출생정보 |
| --- |
|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br>√ 비식별화된 가명<br>√ 비식별화된 관리번호<br>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아동의 성명(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br>3. 아동의 출생 순서<br>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br>5.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br>√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br>√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br>√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br>√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기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5조제1항).

### 출생통보 후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 3.2. 양육될 권리

### 3.2.1.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 아동인도

#### 숙려기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 다만,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인도절차

▪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 위기임산부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위기임산부가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인도에 따른 친권행사 및 후견인선임 효과

▪ 보호출산 아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후단).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후단).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3쪽)**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관계 법령에 따라 후견인이 새롭게 선임·지정되거나 ②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거나 ③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3쪽).

## 긴급 보호조치

###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긴급보호 인프라 확보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 보호해야 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7쪽).

▹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시설) 등 다양한 방식의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7쪽).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 300명)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을 일시 보호 중인 긴급보호 인프라를 대상으로 아동 1명당 주 25만원의 긴급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67쪽).

### 최종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전단).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다만, 보호출산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음)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가정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의 보호조치 결정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 위 3.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참조).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71쪽).

> ※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아동의 알권리

### 3.3.1. 출생증서 공개 청구

#### 출생증서 작성

##### 작성(속지·봉투)내용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출생증서(속지) 포함 사항**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6.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함)
7.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생략 가능 사유

-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다음의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 보관방법

▪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본문).

▹ 다만,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

## 출생증서 공개청구

### “출생증서 공개청구”란?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단서).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 공개청구 신청방법

▪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문서신청)**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서면·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2. **(구두신청)**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서면·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

> ※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
> Q.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질병 치료를 위해 유전질환 관련 가족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출생증서 공개가 가능한가요?
>
> A. 단순한 의료 목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202쪽).
>
>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람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 요청하였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관계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및 통보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후단).

1. (문서통보) 문서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서면·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2. **(구두통보)**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하고,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 후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출생증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Q. 생부가 출생증서 공개를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나요?

A.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

### 공개의 방식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전단).

-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후단).

※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https://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출생증서 공개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